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952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우형찬, 홍성룡, 노식래,
추승우, 김화숙, 송재혁,
박기열, 박순규, 김상훈,
이광호, 이은주, 이영실의원
(12명)

1. 주 문

- 「도로교통법」에서는 전용차로 종류와 해당 전용차로 통행차량과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전용차로 현황 및 주변도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용차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등과 협의하여 일정구간, 특정차량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등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전용차로별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용차로의 구간, 통행량, 주변도로 교통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용차로 설치시에는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등과 협의하여 전용차로를 설치하였으나 효율적인 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통행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의 통행에 대해서는 협의가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시장등은 도로여건과 교통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전용차로 운영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등과 협의하여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과 통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4.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 경찰청, 서울특별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등은 지방철장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전용차로 형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및 도로여건, 전용차로 통행량 등 교통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지역사정과 개별도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용차로 운영이 어려운 등 불합리한 교통체제로 인해 교통사고 및 시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용차로의 설치에 시장등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나, 전용차로 설치 이후 전용차로 통행 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 및 도로의 특성과 교통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용차로 설치 시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한 만큼 필요시 전용차로로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과 차량에 대해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함

2020. 10.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